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11 선고 2017가단6004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

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18. 4. 13.

판결 선고 2018. 5. 1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07,523,696원과 이에 대하여 2017. 1. 9.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연 5%,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A와 B 차량(이하 '원고차량'이라 한다)에 관하여, 피고는 이륜차량인 C(이하 '피고차량'이라 한다)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.

나. D은 2016. 8. 17. 08: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 신한은행 독산남지점 앞 교차로 부근을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 중임에 도 독산로 65길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구로전화국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 1차로로 직진하던 E 운전의 피고차량 전면부를 원고차량 우측측면으로 충격하여 피고차량에 동승하였던 F으로 하여금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(이하 '이 사건사고'라 한다).

[인정근거] 갑 1,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

원고는,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 D의 과실과 피고차량 운전자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, E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인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에서 피고차량을 60m의 짧은 구간에서 시속 45.2km에서 시속 78km까지 급가속하며 차량 사이로 추월하여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차량과 충돌하는 잘못이 있는바, E의 과실을 적어도 30%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358,412,320원의 30%에 해당하는 107,523,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속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일정부분 과속주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차량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원고차량이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 하였어야 함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차량의 과실이 90% 이상이라고 다툰다.

3. 판단

가.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의 성립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좌회전한 D의 과실과 반대방향에서

직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원고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, 원고는 원고차량의,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각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인 F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, 아래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F의 치료비 및 유족들과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E 및 피고를 공동면책시켰다고 보이므로,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에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.

나. 구상금채권의 범위

1)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적정 여부

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F의 치료비로 18,412,320원을 2016. 10. 14.에 지급한 사실, F의 부모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합계 507,339,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(자) 청구의 소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04563)를 제기한 사실, F은 사고 당일 E과 함께 예비군훈련장에 가기 위하여 E 소유의 피고차량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여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, F의 부모는 위 소송에서 G 생인 F이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, 조력공에 해당하는 1일 110,194원(월 2,424,268원)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일일수입과 장례비에서 F의 과실 10%를 공제한 금액과 위자료 청구한 사실, F의 유족은 D으로부터 30,000,000원의 형사합의금을 수령한 사실, 원고는 F의 과실을 30% 정도로 보고 산정한 340,000,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부모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F의 안전모 미착용 잘못 등이 참작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.

2) 책임비율

이 사건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장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위 각 증거에 의하면,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지의 직선구간이고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의 오전 시간으로 전방에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었던 사실, D은 사고당시 직진신호였음에도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고차량을 보지 못한채 좌회전한 사실, E은 차량정체로 느리게 진행하던 중

앞에 차량이 없자 사고지점 약 60m 앞에서 가속을 하였다가 원고차량의 앞부분이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보고 제동을 하였으나 뒤에 피해자가 타고 있어 스키드마크가 생길 정도의 급제동은 하지 못한 사실, 교통사고보고서에는 피고차량의 속도가 시속 41-50km로 기재되어 있고, E은 시속 50-6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위 인정사실에 이론차는 급정거시 전도의 위험이 높은 점과 비보호 좌회전표지는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허용하는 표지(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)인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,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비율을 원고차량 90% : 피고차량 10%로 인정함이 상당하다(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)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의 출재로 공동면책된 358,412,320원(=18,412,320원 + 340,000,000원)의 10%인 35,841,2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다. 피고의 구상금 지급

한편,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35,841,240원의 구상금을 모두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은 더 이상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김진철